

#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호)

- 2018. 09. 10.
- 재정건설위원회  
위 원 장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08.03.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08.06.
- 다. 상 정 일 자 : 2018.09.10.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1회 1일)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 우리사회 노인인구 비중이 매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치매인구도 급증하고 있어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 증가, 가족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며 치매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됨
- 따라서 어르신 치매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함
- 이에 서초구 치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무가 6년이 경과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질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최충열)

####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서초구의 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한 대상사무는 그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 ■ 서초구 치매지원센터는

- 지난 2008년,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1)에 근거하여 설립하였고, 「치매관리법」 제20조(위임과 위탁)2)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3)에 근거하여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위탁하였으며,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1)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 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6.12.]

2)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그 밖에 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 소요예산은 국, 시, 구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은 50:25:25이며, 2018년 예산 6억 8천만 중 구비 1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치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합니다.)의 위탁업무는 치매예방과 인식개선, 치매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치매가족지원사업, 치매관리체계구축 등이며, 세부사업으로 치매 선별검진 및 정밀검진 시행, 상태 모니터링 및 뇌건강 상담, 인지건강 프로그램, 기억키움학교 운영, 치매어르신 안심 하우스 운영, 저소득층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助護物品) 지원, 기억친구 가입 및 활동, 치매전문자원봉사단 모집 및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센터 운영의 누적통계를 살펴보면,
  - 센터에 등록된 어르신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현재 서초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53,119명 중 34,534명 즉 65%의 어르신이 센터에 등록하였으며,
  - 아래의 인지기능 상태별 등록현황에서 보듯이, 고위험과 치매 어르신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인지기능 상태별 등록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정 상	25,845	90.0	29,094	88.8	30,494	88.4
고 위험	1,127	3.9	1,504	4.6	1,660	4.8
치 매	1,736	6.1	2,150	6.6	2,380	6.8
합 계	28,708	100.0	32,748	100.0	34,534	100.0

※ 민간위탁동의안 관련자료 4쪽

-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은 민간위탁동의안 관련 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고, 사건·사고 발생은 없었습니다.

##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초구 치매지원센터는

서초구 어르신 중 치매추정 인구가 9%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치매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부담 및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으며,

- ※ 2017년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 53,119명  
중앙치매센터 고시 유병률에 근거한 치매추정 인구 4,690명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검진 및 상담, 건강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사무이므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4) 및 제4조의25) 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치매지원센터 본래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 및 체계화된 업무처리 정착 등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4)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5)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어린이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재활용센터 등 환경위생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영어센터 등 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문화·체육 및 청소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공영주차장 등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 및 휴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사무의 위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3.05.02.]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치매지원센터의 인적 운영 등에 대하여

#### ① 가족카페와 쉼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답 :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안심하우스는 우리구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센터 등록하신 분들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족들에게 일대일 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육장을 만든 것임

#### ② 현재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은 있지만, 심층검진을 담당하는 임상심리사가 없는데, 앞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답 : 임상심리사는 인건비가 높아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내는 거의 없고 현재는 간호사나 작업치료사가 고도의 교육 후에 실시하고 있음. 향후 여건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고려하겠음

#### ③ 현재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센터의 인원이 대폭 확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센터의 계획은?

답 : 보건복지부의 권장 인원수는 20명이나, 현재 우리구는 13명이고,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면 올해 2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인건비를 추가 확충해주시면 5명을 더 추가로 충원하겠음

질) 센터 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등록률은 42.5%이지만 반포동은 70%, 반포3동은 21.9%로 지역별로 등록률 편차가 심한데,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답 : 상·하반기에 3일씩 동주민센터에서 ‘치매검진의날’을 시행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를 권고하고, 등록하신 3만 4천명에 게도 계속 메일을 보내고, 독거어르신은 찾아가서 검진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임.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 「치매관리법」 제17조에 근거한 치매상담센터는 2018년 12월 13일부로 치매안심센터로 변경이 예고되었는데, 향후 개정된 법 시행에 맞춰서 조례명을 치매안심센터로 통일하고, 내부적으로도 조례에 근거하여 ‘기억키움센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답 : 우리구의 치매지원센터의 명칭은 치매라는 말이 낙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견에 따라 ‘기억키움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법 시행에 맞춰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치매지원센터가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내곡동에 위치한 느티나무쉼터로 이전함에 따라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답 :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는 지하에 68평 규모로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못했으나, 내곡느티나무쉼터는 240평 규모에 프로그램실 3개, 교육실, 안심하우스, 가족을 위한 공간 등이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음. 다만 서초동 거주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다소 떨어졌으나, 서초3동 경로당을 서초느티나무쉼터로 변경하여 4층에 기억키움학교를 운영 중에 있음

## 질)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 ① 민간위탁과 관련한 제출 자료를 보면, 일반현황, 지원현황만 있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유병률 감소 등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데, 제출 자료를 더욱 충실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은 어떻게 하는지?

답 : 치매는 특성 상 조기발견해도 진행을 늦출 뿐 유병률을 낮출 수는 없기에 치매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지원책으로 월 3만원씩 의료비 지원, 치매가족 교육, 치매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고, 센터 자체에서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② 지금까지 민간위탁 공개모집 응모업체 및 수탁업체가 계속 한곳뿐이어서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관악구는 직영으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민간위탁의 장점은?

질 : 국가 단위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은 전문적인 검사 및 진료 등에서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인력운영차원에서도 시간제 인력 고용에 따른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음

- ③ 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한분을 위촉할 의향은?

답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사구정리내용 : 없음